

정부지원자금 (II)

— 지원자금별 특징과 내용 —

■ 생산기반기술개발사업

생산기술개발자금 지원사업은 산업의 공통애로성과 기반성을 갖는 기술분야로서 기업 단독의 개발이 어려운 분야의 연구개발비 및 시험생산설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술고도화에 의한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위한 사업임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지원(제조업 전 분야)
- 공업발전기금 지원(첨단산업기술분야)
-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지원(산업기반기술 및 공정기술분야)

기술개발자금 지원규모

자 금 명	지 원 규 모 (억 원)		'92 지원과제 건수
	'92 지원실적	'93 지원계획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720	900	504 과제
공업발전기금	520	400	251 과제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120	100	58 과제
계	1,360	1,400	813과제

▲ 문의처

- ☎ ○ 생산기술연구원 :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22-13 (TEL : 860-1633/7)
기술관리본부 총괄조정과, 기술조사실, 상담실
- (재)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진흥부(산업지원과)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1 조선일보 2층
(TEL : 725-3751/3, FAX : 725-3750)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목적

공업기술수요조사를 통하여 발굴한 공통애로 기술과제 또는 시급히 개발해야 할 전략산업 기술개발 분야로 연구개발능력을 보유한 연구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추진시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1. 지원 대상과제의 범위

가. 중소기업의 공통애로기술로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과제

나. 당해기술의 개발로 인하여 수출촉진, 수입대체 또는 관련산업에의 과급효과 등이 매우 높으나, 기업단독에 의한 개발이 어려워져 정부가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과제

다. 기업보유의 연구개발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술개발 성과의 광범위한 보급을 위해 산·학·연등과의 공동연구를 촉진할 필요가 있는 기술과제

☞ 관련근거 ;

공업발전법 제13조 및 공업발전법시행령 제8조 내지 제12조

2. 과제선정 절차 및 대상과제의 고시

가. 공고절차

기술수요조사에 의한 과제도출



연구기획단 심의선정



전문위원회 최종확정



상공자원부 공고

나. 공고방법

- 해당 기술과제명은 관보게재 및 주요경제지에 광고
(세부개발목표 및 기술내용은 별도로 작성하여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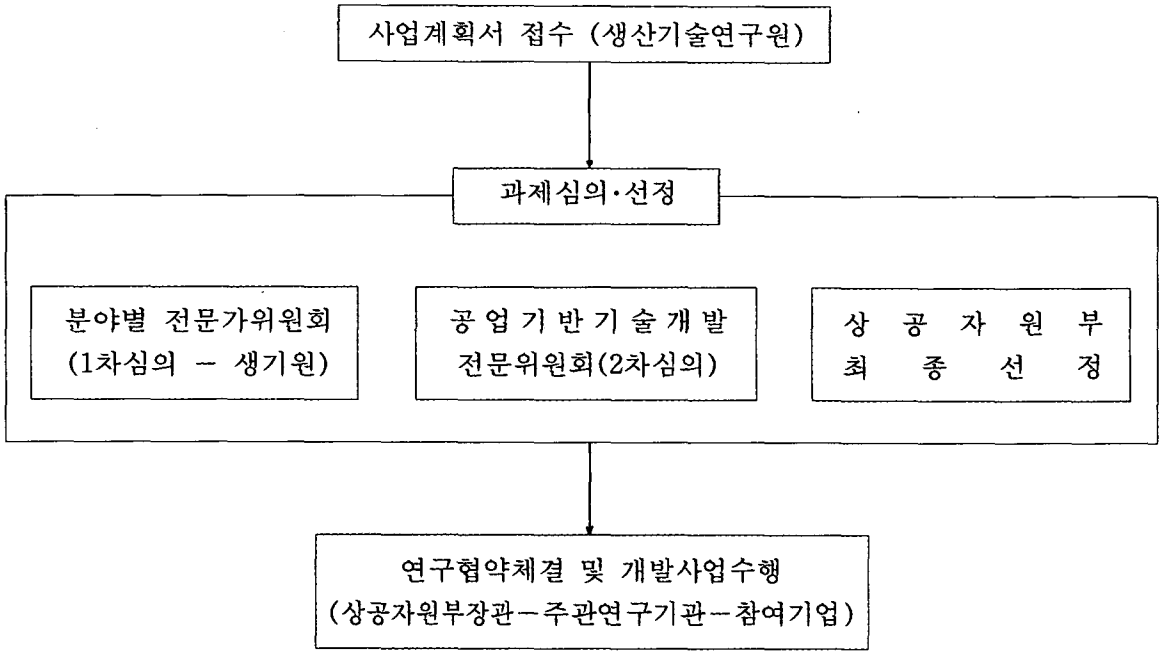
다. 개발비 지원범위

- 과제별로 기술성, 개발방법, 참여기업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소요개발사업비의 2/3이내에서 기업참여 형태별로 구분 지원
- 중소기업 참여 우대

라. 과제신청 및 접수

- 개발대상과제에 대하여 약 2개월간 공고후 소정양식에 의한 공업기반기술 사업계획서를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일정기간내에 접수
- 기업의 개별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주관기관이 신청하여야 함
- 주관연구기관의 선택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마. 선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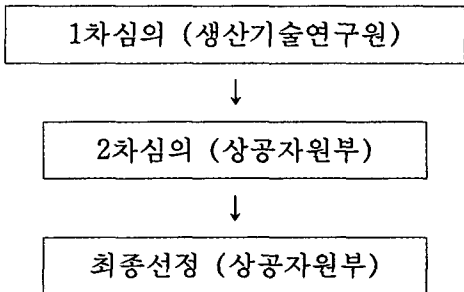


☞ 주관연구기관이란 : 당해과제의 연구개발능력을 보유한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대학,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및 생기원)

● 공업발전기금중 첨단산업기술개발사업

목적
상공자원부 고시 제90-26호 및 91-23호에 정한 첨단산업의 업종 및 범위에 해당하는 생산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및 시험생산설비 등의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국내 첨단산업의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바. 과제심의 및 지원대상 과제선정



1. 자금운영규모 및 조건

- 규모 : 400억원
- 융자조건 : 년 6.5%, 5년 이내 상환(거치기간 2년포함)

- 용자한도 : 제한없음
- 용자비율 : 소요자금의 70% 이내

2. 자금 지원대상

- 상공자원부에서 고시한 정밀전자, 메카트로닉스, 정밀화학, 생물산업, 항공기산업, 광학산업, 신소재 등 첨단산업의 업종 및 범위에 해당하는 생산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3. 용자 우선대상사업

- 상공자원부장관이 생산기술발전 5개년 계획으로 시행 공고한 과제의 개발사업
- 2개 이상의 업체가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
-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

4. 지원범위

- 기술개발을 위한 자체연구 및 위탁연구 개발비
(연구인건비, 재료비, 시험검사비, 교육연수비, 기술지도비 등)
- 연구개발용 기구, 기자재 구입비
- 기술도입비
- 외국기술 인증 획득비
- 시험 생산설비의 건설 및 운전비
- 기술개발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타 경상운영비 성격의 경비

5. 지원 및 신청방법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생산기술연구원 기술관리본부
- 접수기간 : 2차('93. 7. 1-7. 31), 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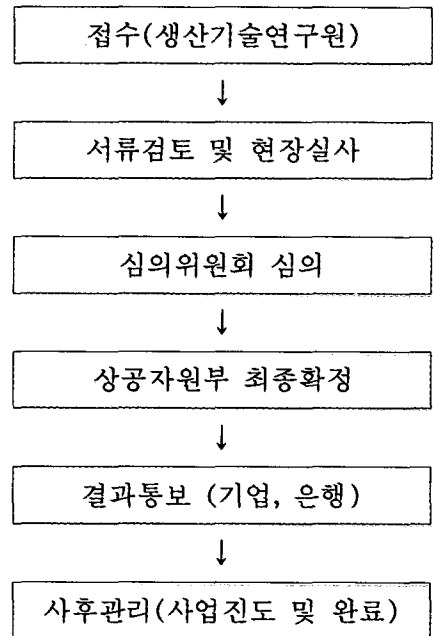
일간경제지에 공고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2부 및 관련 참고자료

☞ 문의처 :

생산기술연구원 기술관리본부
총괄조정과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22-13
TEL : (02)860-1633/7
FAX : (02)860-1629

6.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및 관리체계



☞ 관련근거 :

공업발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8조

●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중 기술개발 자금 지원사업

목 적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통한 국산화 촉진, 생산성향상 및 원가절감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중 일부를 기술개발 부문에 지원하는 사업



1. 자금 운영규모 및 조건

- 자금규모 : 100억원
- 용자조건 : 년 6.5%, 5년이내 상환(거치기간 2년 포함)
- 동일인 한도 : 3억원 이하
- 용자비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2. 자금지원분야(공정기술)

자동화공정 개발(설계, 가공, 검사, 조립, 포장, 운반, 공정제어 등)

3.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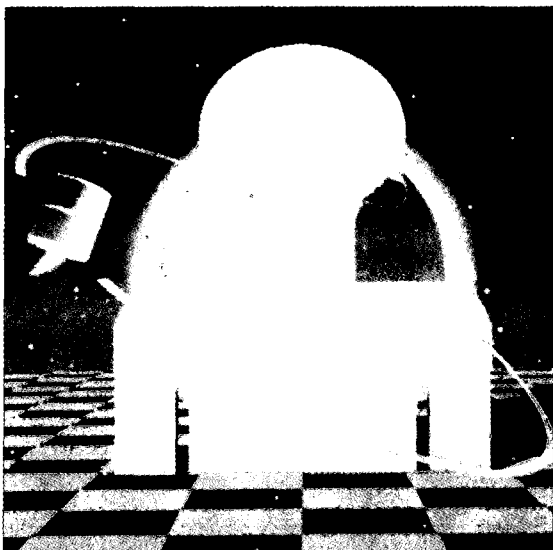
- 개발대상기술을 연구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 산업기술연구조합등

4. 지원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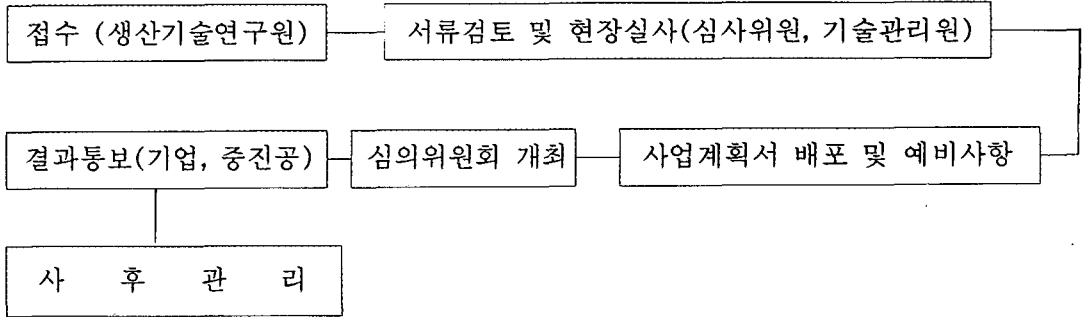
운 전 자 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 시험·검사비, 기술인력 인건비, 기술도입비 등	연구용·시제품 제작용기계, 장치 및 기자재 구입비

5. 지원 및 신청방법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생산기술연구원 기술관리본부
- 접수기간 : 주요 일간경제지에 공고 (5월 예정)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2부 및 관련 참고자료



6. 지원대상 사업자 확정 및 관리체계



● '93년도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지원내용

사업별(자금)	지 원 대 상	금리	용도	대출기간	지원한도 & 비율
정 보	- 신청일 현재 1회이상의 결산신고를 필한 자로서, 컴퓨터를 이용, 공장자동 화, 경영관리전산화등 정 보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년 7.5 %	시설 및 운전	5년 이내 (거치 2년 포함)	3억원 이하 (소요자금의 100%이내)
		년 7.5 %	시설 및 운전	5년 이내 (거치 2년 포함)	3억원 이하 (소요자금의 100%이내)
		년 7.5 %	시설 및 운전	5년 이내 (거치 2년 포함)	3억원 이하 (소요자금의 100%이내)
화	- 산업정보자료를 DB화 및 NET-WORK를 구성·운 영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년 6.5 %	시설 및 운전	8년 이내 (거치 3년 포함)	5억원 이하 (소요자금의 100%이내)

(주)'93년도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은 12개 사업별로 총 5,303억원이나, 본 란에는 정보화 사업분야(300억원)만 소개함.

■ 세제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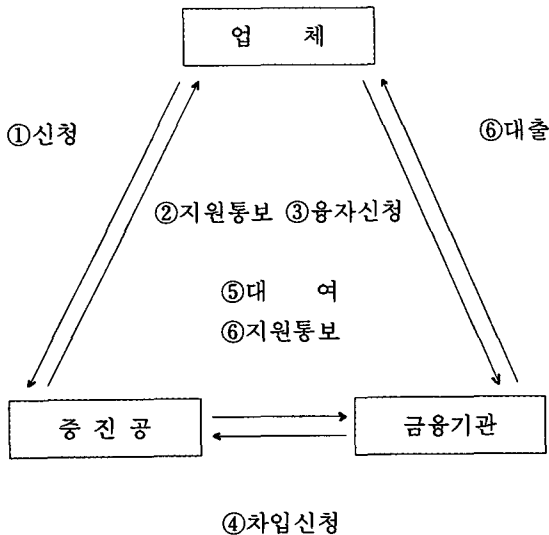
사 업 별	세 제 지 원 내 용	근 거 법
자동화, 시설근대화 대기업사업이양, 소기업, 사업화, 개별정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세액 공제 국산기자재 15%(외산 5%) ○ 특별감가상각 국산기자재 50%(외산 30%) 	조 감 법 제 18 조 제 71 조
정 보 화 (범용 S/W개발)	○ 기술용역사업 및 S/W개발사업에 대하여 5년간 소득금액의 50% 소득공제	조 감 법 제 20 조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MBC앞)
중소기업상담실(중소기업구조조정센터)
(전화번호 : 769-6631/5)

■ 자금지원절차

용자지원(대리대출)



* '93. 6. 8 이후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직
접대출로 전환예정임

■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

목 적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은 성장 유망한 중소기업이 자동화, 정보화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빠른 시일내에 활력을 되찾고 국제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를 포함한 모든 유관기관이 총력을 모아 합동으로 추진하는 획기적인 사업

1. 자금 규모

지 원 구 분	자 금 규 모
총 자 금 규 모	1조 3,200억원
시 설 자 금	9,000억원
운 전 자 금	4,200억원

2. 지원신청의 기본요건

-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산품 기계나 정보처리업체로서 제조업 전업을 50%이상인 기업
- 기업가의 경영자세가 건전한 기업
- 미래 성장이 유망한 기업
-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국내인의 지분이 50% 이상일것

- 1년이상 공장을 가동중인 기업 (개발기술사업화 관련 경우는 예외)
- 각 유형별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금융여신거래가 가능한 기업

3. 선정의 기준

- 건설도, 성장가능성, 사업타당성 평가후 적합한 기업

4. 지원조건

- 대출금리
 시설자금 - 6%
 운전자금 -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
 * 운전자금 지원은 기계설치가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지며, 금액은 취급은행 자체기준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5. 사업의 유형

사 업 유 형	
자동화 추진 중소기업	▶ 개발기술사업화의 대상 - 정부지원에 의해 개발된 기술, 연구소등과 공동개발한 기술,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획득기술, 기타 기업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기술등을 사업화하는 기업 ▶ 2개이상의 사업을 동시 추진시에는 각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1개의 사업이 기준미달인 경우에는 감점
정보화 추진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 추진 중소기업	
자동화·정보화 동시추진 중소기업	
자동화·개발기술사업화 동시추진 중소기업	
자동화·정보화·개발기술사업화 동시추진 중소기업	

* 업체의 실정에 맞는 사업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